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(경유) 수신자 참조

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. 서울시 복지정책과-42856(2022. 12. 30.)호 및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(보건복지부) 3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안내 관련입니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, 자치구와 시설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채용,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: 공개 채용자

○ 종사자 공개채용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

- 보건복지부 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」 공통 적용사항 의거, [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직원\(시설장 포함\)은 공개채용 원칙](#)이며, [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](#)

○ 아래의 공개모집 원칙 예외 적용 종사자(시설장 포함)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가능

- 다음 각목① ~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하에 공개모집 원칙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

<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전제사항 >

- ㉠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
- ㉡ *[동일한 설치·운영자와 근로·고용계약이 체결](#)되어 있을 것
- ㉢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,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[**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](#)
- ㉣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

- ① 동일한 시설내에서 승진,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
- ② 동일한 설치·운영자가 각각 설치·운영하는 시설
- ③ 설치·운영자가 각각 설치·운영하는 시설간 인사이동
- ④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나 시설의 위·수탁 계약에 따라 종사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경우
- ⑤ 출산·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원인이 된 출산·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,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
(단 대체 근무자로 최초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공개채용자여야 함)

※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(보건복지부) P.51 ~ P.54 참고
 자료는 [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자정보법인/시설/단체번호 648](#)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기 바람

※ *동일한 설치·운영자와 근로·고용계약이 체결 관련 주의사항

◎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질의 사항 : 2022. 4. 22.

- 질의 : 00 사회복지관에서 계약직(기간제)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2022. 5. 31.일자로 계약 만료후에 6월 1일자로 육아휴직 종사자 대체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 원칙 예외 해당여부
- 답변 :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장이 아닌 “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즉 이사장과 기간제 채용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- 만일 법인의 설치 운영자인 대표이사(이사장)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귀 복지관의 시설장(관장)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개채용하여 함 (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미충족)

※ **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

<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>

- 시설 설치·운영자인 법인의 임원,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㉠. 6촌 이내의 혈족
 - ㉡. 4촌 이내의 인척
 - ㉢.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법인의 임원,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,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

나. 시설장 보조금 지원자격 : 최소경력 충족자

○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 시설 자부담

- (최소 경력기준)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,
 - ▶ 10인 이상 시설 : 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」에 따른 경력이 10년(11호봉) 이상인 자
 - ▶ 10인 미만 시설 : 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」에 따른 경력이 7년(8호봉) 이상인 자
- ※ 시설장 최소 경력기준은 2020. 1. 1. 이후 신규채용 된 시설장부터 적용
- ※ 종사자(시설장 포함) 10인 기준 : 경상보조금(사바구비) 지원인력임

다. 공개모집시 외부 공고 관련 주의사항

-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(www.work.go.kr), 복지넷(www.bokji.net)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ww.w4c.go.kr) 또는 희망이음(www.ssis.go.kr) 중 3곳 이상의 사이트(단, 워크넷, 복지넷, 희망이음 중 2곳에는 반드시 공고)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(2023년부터 적용)
- ※ 2022년 지침 :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(work.go.kr), 복지넷(bokji.net),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(w4c.go.kr) 중 2곳 이상의 사이트(단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는 반드시 공고)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(2022년부터 적용)
- ※ 2021년 지침 :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(work.go.kr), 복지넷(bokji.net),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(w4c.go.kr)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
- ※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(단축 공고시 사전에 관할 자치구와 협의할 것)
- ※ 특히, 시설 재무·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

붙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관련 자료 1식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25개자치구(장애인)

주무관 **박진수** 장애인일자리 **강윤경** 장애인 자립 지원과장 **07/27 경자인**

협조자

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-17233 (2023. 7. 27.) 접수 (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, 110 신청사 2층 장애인 자립지원과 / <http://www.seoul.go.kr>

전화 02-2133-9614 / 전송 02-2133-0839 / eyefrog030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